

김용무

명순구*

들어가며

오늘날 ‘법률가’라는 용어는 재판에 관여하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법학자, 국가기관·기업 등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부류의 법률 전문가를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법률가 양성 체계의 시작은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로 볼 수 있다. 초기 법관양성소는 실무과목 위주의 속성(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法官養成所規程』¹⁾ 제1조). 갑오개혁 이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 고려대를 거쳐 프랑스 파리1대학교(Panthéon-Sorbonne)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교무처장·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교육부·법무부·통계청·법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문위원, Erasmus Mundus 초빙교수(Université du Havre, France), 민사법학회·비교사법학회 이사·상임이사·부회장, 사법시험·외무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석탑연구상·석탑강의상·공로상, 프랑스 정부로부터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미(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을 받았다.

정부는 1895년부터 대규모의 관비 유학생²⁾을 일본에 파견한다. 이때 일본에 파견된 관비유학생 가운데 이면우(李冕宇)·유문환(劉文煥)·장도(張燾)·홍재기(洪在祺)·석진형(石鎭衡)·박만서(朴晩緒)·신우선(申佑善)·장헌식(張憲植)·유치형(兪致衡)·양대경(梁大卿) 등이³⁾ 귀국하여 법률전문 교육기관⁴⁾에서 법학 교육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자격을 취득한 후 1세대 법조인 그룹을 형성한다.

김용무(金用茂: 1891~1951⁵⁾)는 1912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여 1915년 졸업하였다(제8회). 졸업 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23년에 귀국,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였다.⁶⁾

-
- 1) 전문은 국회도서관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국회도서관, 1970, 348~349면.
 - 2) 박태원(朴泰遠, 1909~1986)은 1933년 12월 8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한 소설 「낙조」(落照)에서 1895년 일본 유학생(1895년 관비 유학생은 전원이 게이오 기추쿠(慶應義塾) 유학)들을 몇 회에 걸쳐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이들에 대한 소개는 김효전,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소명출판, 2014, 248면 이하 참조.
 - 4)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보성전문학교(사립)와 경성전수학교(관립, 법관양성소의 후신으로서 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칭)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후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발전했다. 보성전문학교와 경성전수학교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명순구,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 교육 100년: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0집 제2호(2020. 2.), 307쪽 이하 참조.
 - 5) 김용무의 사망 시기에 관해서는 1951년, 1957년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2004년 한 매체는 그가 1950년 6·25전쟁 때에 납북되어 전쟁 중에 사망하였으며, 2004년 3월 평양 용성구역에 조성된 '재북인사들의 묘'에 안장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https://web.archive.org/web/20071006151502/> / <http://www.minjog21.com/news/read.php?idxno=1539#>; 방문: 2020. 1. 31.).

김병로·이인·허헌 등과 함께 형사변호공동연구회(1923)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변론을 수행하였다. 동아일보 취체역(1930), 보성전문학교 촉탁강사 및 교장(1935~1937), 미군정기 대법원장, 미군정기 법전기초위원회 위원장,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용무는 김병로·이인과 함께 우파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자로서 미군정기 남한의 법조계를 이끌었다. 이들 세 사람은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한 경력에다가 식민지 말기까지 일체에 협력하지 않아 해방공간에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혼치 않은 사람들이었다.⁷⁾

김병로·이인은 해방과 6·25전쟁 후에도 여전히 법조계 지도자로서 활동했으나, 김용무는 6·25전쟁 때에 납북되어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식민지 시대 및 해방공간에서 그의 활약상에 관한 소개가 실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빈약하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아래에서는 김용무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김용무에 관한 소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적 배경도 함께 설명한다.

I. 제도적 배경

김용무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학하고 일본 변호사시험⁸⁾을 통

6) 『동아일보』(1923. 2. 19. 2면)는 다음과 같이 김용무의 변호사 개업 소식을 알리고 있다: “金用茂氏(辯護士) 普成專門學校와 中央大學을 優等成績으로 卒業하고 昨年 東京에서 辯護士試驗에 合格하였는바 今般 仁寺洞 七五番地에서 開業하고 一般民刑事務를 取扱한다더라.”

7) 김두식, 『법률가들』, 창비, 2018, 287쪽.

8) 일부 문헌은 김용무가 1922년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등시험 사법과가 처음 실시된 것이

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식민지 시대 한반도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다양했다. 그리고 법조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 자격시험이다 보니 그것은 교육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교육제도와 법조인 선발제도를 간략히 알아본다.

1. 교육제도

교육과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 한반도에서 시행된 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조선교육령」이다. 「조선교육령」은 日王⁹⁾의 칙령으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총독부령인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조선교육령」이 제정·공포된 시점은 일본 본토에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던 시점이어서 「조선교육령」은 제령(制令)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제령보다 상위의 칙령으로 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지 한반도 교육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처음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세 차례(1922년, 1938년, 1943년)에 걸쳐 개정되었다.¹⁰⁾ 여러 차례 개정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수업연한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변천을 거듭했지만, 식민지 시대를 통틀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된 것도 있었다. 그

1923년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들 문헌의 기록이 오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일본에서는 ‘天皇’, 북한에서는 ‘倭王’, 대한민국에서는 ‘日王’으로 부르는 등 호칭이 일정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日王’을 사용한다.

10) 「조선교육령」의 성격과 구체적인 변천에 관해서는 명순구, 앞의 글 「3·1 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295~300쪽 참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초등교육 다음 단계의 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두고 있었지만, 이것은 일본 본토의 중학교와 동등한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 한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보통학교인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의 전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본토에는 구제(舊制) ‘고등학교’가 있었고, 이들 고등학교 중 제1고등학교, 제2고등학교와 같이 숫자가 붙은 이른바 ‘넘버스쿨’을 졸업하면 교토(京都)제대, 도호쿠(東北)제대, 규슈(九州)제대의 대부분 학과에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했다.¹¹⁾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은 도쿄(東京)제대에 진학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식민지 한반도에서 일본 고등학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경성제대 예과¹³⁾가 유일했다.¹⁴⁾

둘째,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사립과 관립을 분명하게 차별했다. 사립으로서 보성전문학교를 예로 들어본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1915. 3. 24. 조선총독부령 제24호)¹⁵⁾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유지함에 족한 재산이 있는 재단법인이 됨을 요한다.”(제3조의2 신설)고 규정한다. 같은 날 공포된 「전문학교규칙」(1915. 3. 24. 조선총독부령 제26호)¹⁶⁾은 개정 「사립학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11)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41~42쪽.

12)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42쪽.

13)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정치 정책을 반영한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은 한반도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출범하게 된다. 경성제대에 본과로는 법문학부(3년)와 의학부(4년)가 있었는데, 본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2년 과정의 예과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14)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42쪽.

15) 원문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789호(1915. 3. 24.), 313쪽, 325쪽 참조.

16) 원문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789호(1915. 3. 24.), 314쪽, 326쪽 참조.

면 ‘전문학교’라고 할 수 없도록 했다(제7조).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보성전문학교 1915년 4월 1일부터 ‘전문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다. 1922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야 ‘보성전문학교’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관립으로는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1895),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 1911),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1922)가 순차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법률전문학교로서 기능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예산 보조를 받아 학비가 다른 관립전문학교보다 저렴하고 취직에서도 유리하여¹⁷⁾ 당시 인기가 높았다.

식민지 시대 한국인 중에는 일본 사립대학에 유학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¹⁸⁾ 경성제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립대 예과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고등학교 대신 사립대 예과를 거쳐 본과 진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예과/본과의 정규 코스가 아니라 전문부(3년)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문부는 입학시험만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했다(학력도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음); 당시 일본 대부분의 사립대(와세다, 간사이, 리스메이칸, 메이지, 주오, 니혼 등)는 전문부를 운영하여 재정을 보충했다.

2. 법조인 선발제도

식민지 한반도에서 활동한 법조인들의 부류는 그야말로 극히

17)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은 각 지방법원의 서기과 서기 또는 통역생으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졌다.

18)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89쪽 참조.

다양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문헌이 1935년 한반도 법조인들의 출신을 분석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¹⁹⁾

민족별	진 출 경 로	인원수 (명)
일본인	메이지(明治) 시대 전반기 존재했던 대언인(代言人) 면허자	3
	제국대 법률학과 졸업자(한때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 부여)	27
	일본 판검사 경력자	8
	조선총독부 임명 판검사 경력자	45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 ²⁰⁾ 합격자	34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자	34
	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40
	다이쇼(大正) 8년 제령 13호에 의한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자	9
계		170
한국인	제국대 법률학과 졸업자(한때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 부여)	1
	조선총독부 임명 판검사	113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	5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자	17
	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1922년부터 일본변호사시험과 별도 시행)	44
	통감부 시대 판검사 경력자	7
	대한제국 시대 판사 경력자	6
	대한제국 시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19
계		212
총 계		382

위 표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 법조인의 수가 상당했다. 둘째, 가장 많은

19)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107~108쪽.

20) 일본에서는 판검사 임용시험과 변호사 임용시험을 분리해서 시행하다가 1923년부터는 이를 고등시험 사법과 시험으로 통합했다.

수를 차지한 것은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판검사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판검사 밑에서 서기 또는 통역사로 일하다가 판검사 임용된 경우이다. 셋째, 대한제국 시대 변호사시험은 국권이 침탈되기 직전 잠깐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허헌(許憲)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 넷째, 대한제국 시대 판사 경력자란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역대 변호사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천했다: ① 대한제국 시대 잠깐 시행되었던 변호사시험; ②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조선 변호사시험²¹⁾; ③ 해방 직후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되었던 변호사시험; ④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과거 변호사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 시행되었던 고등고시 사법과; ⑤ 1963년부터 고등고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대체됨; ⑥ 2012년부터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함.

고등시험 사법과는 이런 모습이였다:²²⁾ ① 시험 형태는 예비시험, 필기시험, 구술시험의 3단계; ② 예비시험은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고등학교, 대학 예과 졸업 또는 문부대신이 인정한 동등학력자는 예비시험 면제, 한반도 학교 중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졸업자 예비시험 면제); ③ 예비시험은 2과목(논문과 외국어); ④ 합격자 수는 매년 약 300명; ⑤ 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는 사법관 시보 임용 후 판검사, 나머지는 변호사로 활동; ⑥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인 합격자는 1934년 8명, 1935년 6명, 1936년 5명 등.

조선 변호사시험은 이런 모습이였다:²³⁾ ① 시험 형태는 예비시

21)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도적으로는 판검사가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임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법원행정처, 『한국법관사』, 육법사, 1976, 52쪽).

22) 이에 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51, 143쪽 참조.

험, 필기시험, 구술시험의 3단계; ② 예비시험을 위한 학력 제한 없음; ③ 합격자 수는 매년 약 7명

일제강점기 법조인의 부류가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은 위의 설명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하기는 하나 모두 자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자격과 지식에 대한 심사 없이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가령 미군정 법무국지령 제1호는 미군장교 258명과 법률 전공자가 아닌 한국인 66명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했다.²⁴⁾ ‘이법회’(以法會) 또한 당당하지 못한 역사의 하나이다.²⁵⁾ 1945년 조선 변호사 시험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기간(4일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에서 두 번째 날) 중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일본인 시험관이 도망하는 바람에 시험이 중단되었는데, 응시자들은 이법회를 조직하여 시험위원회를 압박하였고 결국 필기시험 합격증을 교부받았다.

II. 식민지 시대의 활동

1. 형사공동연구회²⁶⁾ 회원

정확한 이름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1923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²⁷⁾ 한국인

23) 이에 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51, 143쪽 참조.

24) 강만길 등, 『한국사 172』, 한길사, 1994, 212~213쪽.

25) 이에 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556쪽 이하 참조.

26) 이에 관한 아래 설명은 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533; 검색일: 2020. 2. 1.)에 의한 것임.

변호사들이 조직하고 활동한 단체이다. 김용무는 김병로, 허헌, 이인, 김태영, 이승우 등 당시 명망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이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 연구회의 취지는 “한 사람에게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 연구하여 변호한다.”는 것이었다.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지만 실제로는 법정투쟁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투사들에게 사식을 넣어 주고, 유족을 돌보아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원단체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회에 속한 법조인들의 법정을 통한 애국활동은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민족지의 활발한 보도를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 연구회에서 맡은 사건으로는 상해임시정부요인에 관한 사건으로 안창호·여운형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해외 독립운동자에 관한 사건으로 정의부(正義府) 연통제(聯通制), 광복단(光復團) 김상옥(金相玉) 등의 사건, 3·1운동 관련 사건, 6·10만세사건과 광주학생사건, 원산노조파업사건, 조선공산당사건, 간도공산당사건 등이 있다.

일제당국은 항일운동이 치열해지자 부담스런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사상범에 대한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총독부는 그들이 지정한 변호사 외에는 사상에 관련된 사건은 변호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써 이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활동이 흐지부지되었다.

27) 주소가 仁寺洞 75번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김용무의 변호사사무실과 동일한 주소이다. 『동아일보』 1923년 2월 19일자 2면은 김용무의 변호사 사무실 개소 소식을 알리면서 주소를 인사동 75번지로 기록하고 있다.

2. 동아일보 취체역

김용무는 일찍이 김성수·송진우·김병로·이인·백관수 및 조병옥·장택상 등과 깊은 교류를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귀국 다음 해인 1924년부터는 동아일보에 ‘질의응답’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독자들의 법률자문에 응했다. 아래에서 법률상담의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²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매우 기초적인 법리에 관한 것이다.

(問) 大正十年分에 甲이 家屋을 建築하올 時에 乙에 土地를 五畝이나 犯用하옵고 落水까지 밧게 되었는데 其當時에 甲乙間에 關係에 말을 하였더니 甲은 말하기를 乙에 土地는 關係가 업다하기에 手續을 하려 하였으나 不得已하여 手續을 못하고 至今 手續을 하려 하오니 時期가 지내도 關係가 업사오며 乙에 土地를 차질수가 잇스며 手續은 엇지 하오면 잘하는지 자서히 소개하여 주옵소서. (不知生)

(答) 乙에 承諾업시 甲이 乙에 土地上에 家屋을 建築하얏스면 乙은 所有權에 基하여 其土地上에 建築된 部分의 撤去를 要求하거나 又是 此로 因生한 損害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辯護士金用茂氏談)

김용무는 1930년 10월 동아일보 취체역으로 취임해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동아일보 김성수·송진우 등과의 교류는 한국민주당을 통한 정치활동과 연결되었고, 이는 김용무에게 있어서 일면에서는 발전의 토대, 다른 면에서는 활동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28) 『동아일보』 1924. 5. 19. 3면.

1924년 보성전문학교 졸업앨범에 김용무가 강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보성전문학교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1924년 졸업앨범은 그 외에도 교장 허헌, 강사 김병로 등 당시 보성전문을 이끌던 사람들의 면면을 읽을 수 있다.

1933년 김용무는 보성전문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등 9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의 일원으로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4년 자료에는 김용무가 재단법인 대표이사 및 촉탁강사로 기록되고 있다.³⁰⁾

김용무는 1935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한다. 약 2년 동안 교장 직을 수행하던 중 1937년 日王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불경스럽게 읽었다는 이유로 총독부의 강요로 교장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교육칙어는 1890년에 제정된 것으로 유교의 삼강오륜에 기대어 日王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분야에서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 한반도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 8. 23.) 직후인 1911년 10월 23일 이후 모든 교과서에 빠짐없이 게재되고, 모든 학생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했다.³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앞의 책 『고려대학교 70년지』, 144~145쪽.

31)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일본의 교육칙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홍·안호상·이인기·유형진 등 26명의 기초위원과 48명의 심사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11월 26일 국회의 동의(만장일치)를 얻어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이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보급되다가 1994년 사실상 폐기되었다.

“나의 신민들은 마땅히 충효를 다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대대로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 국체의 정화이며 교육의 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민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하며 부부가 화목하고 친구는 서로 믿으며, 스스로 삼가 절도를 지키고 이웃을 널리 사랑해야 한다. 학문을 닦고 기예를 배우며 지능을 계발하고 덕을 이루어, 공익에 널리 이바지하고 국헌을 존중하며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급할 때에는 스스로 몸을 바쳐 천지 간의 무궁한 황운을 뒷받침해야 한다.”

교장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1939년 조직된 보전문학회(普專學會)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성전문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III. 해방공간에서의 활동

1. 미군정기 대법원장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9월 8일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재조선 미군사령부 정보장교인 폴 헤이워드(Paul Hayward)는 김성수·여운형·조만식·송진우·김용무·강병순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아치볼드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군정장관의 고문관으로 임명했다.³²⁾ 1945년 10월 11일 미군정은 재판소와 검찰의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³³⁾ 이에 따라 일본인 재판관과 검찰관 전원

32)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181쪽.

이 면직되고 대법원장 김용무, 대법관 이인 등을 비롯하여 판사와 검사가 임명되었다. 동시에 미군정은 식민지 한반도의 최고법원이던 조선고등법원을 대법원으로 개칭하고, 직함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변경하였다. 김용무가 해방공간에서 법원의 수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군정청의 대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민당³⁴⁾ 계열 인사들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김용무는 한민당의 문교부장, 이인은 당무부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³⁵⁾ 이 상황에서 이인은 앞에 나서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수고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을 구성했다.³⁶⁾

당시 대법원장의 위상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미군정의 기본정책과 연관되는 것이다. 미군정법령 제21호(1945. 11. 2. 발효) 제1조(법률의 존속)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률 또한 朝鮮舊政府³⁷⁾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시행중인 것은 그간에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朝鮮軍政府³⁸⁾의 특수명령으로 폐지될 때까지 모두 효력이 존속된다.”³⁹⁾ 일제강점기 법령의 존속 정책은 1948년 제헌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⁴⁰⁾

33) 법원행정처, 앞의 책 『한국법관사』, 170쪽.

34)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존속한 보수적·자유주의 정당의 하나이다. 1945년 9월 16일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등의 합당으로 성립하였다.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이인, 김용무, 장덕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참여하였다.

35)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51, 197쪽 참조.

36)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51, 197쪽 참조.

37) 조선총독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38) 美軍政을 가리키는 것이다.

39)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56, 23면.

이에 따라 해방 직후에는 조선총독부 시대의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이 법원에 부설되고, 법원과 검찰 조직 모두 행정조직⁴¹⁾ 하부에 배치되었다. 미군정청은 1946년 3월 29일 법무국을 사법부(司法部)로 격상시키면서 사법부장에 우돌(Emery J. Woodall)이 취임한 후,⁴²⁾ 같은 해 6월 27일에는 김병로를 한국측 사법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사법부의 하부 조직은 사법부장 밑에 3개의 차장(행정·법무·법제)을 두고, 행정차장은 총무국·감찰국·변호사국을, 법무차장은 법원국·검찰국·형사국을, 법제차장은 소청국·법제국·법률조사국을 담당하도록 했다. 1946년 3월 29일 군정청 조직 개편이 있었고 법률 관련 기관이 정비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3권분립을 기초로 입법부·행정부와 대응하는 위상의 ‘司法部’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司法部’(Department of Justice)가 설치되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 간의 권력분립이 명확한 미국식 헌정 체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1946년 8월 사법부장 김병로는 한국의 법조인을 대표하여 법조 개혁에 관한 건의서를 군정장관에게 제출한다. 개혁 사항 중에는 재판소와 검사국의 분리, 사법권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6년 12월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아 사법부장의 명령으로 법원의 명

40) 제헌헌법 제100조는 “헌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구법령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주장한다—」, 『저스티스』 통권 제103호(2008. 4.), 220면 이하 참조.

41) 조선총독부 시대에는 ‘법무국’이었다. 미군정기 초반에는 ‘법무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46년 3월 군정청 체제 변경 시기에 ‘국’(局)을 ‘부’(部)로 승격시키면서 법무국은 ‘사법부’(司法部)가 되었다.

42) 1946년 7월 11일부터는 코넬리(J. Connely)가 미국측 사법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칭을 대법원·고등심리원·지방심리원으로, 검사국의 명칭을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변경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관, 기타 판사는 심판관, 검사는 검찰관 등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또한 검찰기관을 재판소 부설로부터 독립시켰다. 당시 이루어진 개혁의 핵심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미군정청은 1948년 「과도법원조직법」(1948. 5. 4. 군정법령 제192호)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였다. 이때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런데 군정장관 아서 러치(Archer L. Lerch)는 「과도법원조직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대법원과 사법부(司法部)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을 결정하고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장의 위상을 민정장관 및 과도입법의원 의장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1948년 4월 1일부터 대법원장은 미군정 내부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와 의전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미국 사법제도의 관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그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司法府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가 되었다.

1948. 7. 17. 제헌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행정부와 더불어 독립된 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했다. 1948. 8. 5. 이승만 대통령은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낸 김병로를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같은 날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미군으로부터 사법권 이양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 사법부장 업무 공간(소재: 구 총독부 건물)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대법원 청사(소재: 덕수궁 옆 서소문)에는 과도정부 체제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여전히 근무하는 어색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한미 간에 사법권 이양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고(1948. 8. 16.~1948. 9. 11.), 그 결과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1948. 9. 13. 대통령령 제3호)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13일 사무이양식이 진행되었고, 이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독립된 사법부가 성립되었다.

2. 미군정기 법전기초위원장

1947년 「법전기초위원회」라는 제목의 군정법령이 공포되었다. 아래에서 그 전문을 소개한다:⁴³⁾

법전기초위원회[군정법령 제3호, 1947. 6. 30., 제정]

제1조 법전기초위원회는 민권, 재산권, 친족관계, 상업관계, 범죄의 처벌, 법률의 시행 급 사법행정의 제 수속에 관한 현행법에 대체하여 채용될 기초 법전의 완전한 초안을 작성할 사명이 유함.

기초에는 조선의 관습법과 전통에 특히 유의하여 민주주의적 원리와 건전하고 현대적인 경향이 잇도록 작성할 것임.

제2조 법전기초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관하여 군정장관에게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개개의 법전이 완성되는 시는 조선과도입법의원에 ? 부하며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

제3조 법전기초위원회는 그 사무의 조성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정부의 관리 우는 애국적 민간 인사로 법률 지식이 유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음.

여사한 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를 이행할 것이며 그 성안에 대하여는 승인을 수함을 요함.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3109#0000>: 방문일: 2020. 2. 1.).

남조선과도정부 관리는 위원으로서 이행한 봉사에 대하여 봉급 이외에 부가 보수를 수함을 부득하며 위원회 우는 위원의 업무에 관하여 생하는 필요한 비용은 회계 법규에 의하여 사법부 급 심리원의 예산으로써 지출함.

제4조 법전기초위원회는 남조선과도정부의 각 부, 처, 대행 기관 급 보조 기관으로부터 원조 급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국립법률도서관, 각 심리원도서관 급 국립서울대학도서관에 자유로 출입하여 서적을 열람할 수 있음.

제5조 좌기 제씨를 법전기초위원회의 위원에 임명함.

그에 대하여는 봉급 이외에 부가 보수는 지불치 않아 함.

위원 급 위원장(大法院長) 김용무

위원(司法部長) 김병로

위원(大檢察總長) 이인

제6조 법전기초위원회의 기타 위원은 필요에 응하여 수시 임명함.

부 칙(군정법령 제3호, 1947. 6. 30.)

제7조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미군정청은 앞에서 언급한 미군정법령 제21호(1945. 11. 2. 발효) 제1조(법률의 존속)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민지 시대의 법규 내지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질서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신생국에 주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법전기초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공포된 것이었다. 법전기초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용무(대법원장), 위원으로 김병로(사법부장)과 이인(대검찰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당대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구성되었다.⁴⁴⁾

「법전기초위원회」 제6조는 나머지 위원들을 추후 수시로 임명

44) 金炳華, 『韓國司法史(現世編)』, 一朝閣, 1979, 41면 참조.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제2차 회의(1947년 10월 20일)에서 분과 위원이 결정되고 처무규정(處務規程)이 마련되었다.⁴⁵⁾ 당시 법률잡지 『法政』 11월호는 법전기초위원을 분과별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는 판사와 검사로서 재조 법조인이고, 약간의 재야 법조인(변호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진오와 같은 학자가 극소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 한국에 법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法政』이 전하는 법전기초위원회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⁴⁶⁾

<*: 연락원 겸 조직소위원>

분 과		위 원		
		사법부 및 법원	검찰청	변호사 기타
헌법	행정소송 선거소송	*황성수(헌법), 한근조, *정윤환(행정소송)	정문모	*장후영, 유진오, 신익희
민법1	총칙 재산법	*장경근(총칙), *강병순(물권), *권승렬(채권), 양대경, 유영	옥준진	
민법2	신분법	*장경근(친족), 김찬영, 박이순	김영렬	*고병국(상속)
민사 수속 법	민소·인소 ·비송·화 의·파산	*김윤근(민소·인소), *김갑수(파산·화의), *민복기(강집·경매·비송), 이상기		배정현
상법1	총칙·상행위	이상기	신언한	*최병주(해상·

45) 이에 대해서는 『法政』 제2권 제11호(1947. 11.), 36면; 『법정』 제3권 제6호(1948. 6.), 10면 참조.

46) 『法政』 제2권 제11호(1947. 11.), 36쪽.

	해상·보험			보험), *김준평(총칙·상행위)
상법2	회사법	*홍진기, 이상기	신언한	김준평
민사부속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김태영, 정윤환, 김우설, 한격만, 이명섭		
	형법	*양원일(전반), 이천상, 김찬영	*엄상섭(후반), 조재천	김광근
	형사수속법	*정윤환(전반), 장경근, 진태구, 이상기, 노진설	*이호(후반), 김용찬, 김윤수	김용식
	감옥법	*최병석	이범용, 김완섭	
	국제사법	*홍진기, 김태영		서재원
	각종 처벌법	이천상, 민동식	*박종근, 김윤수	김영재

법전기초위원회가 위와 같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민법전과 형법전 등의 편찬요강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판사·검사인데, 원래의 업무와 법전기초 작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법전기초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法典編纂委員會職制’(대통령령 제4호, 1948. 9. 15., 제정)가 공포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하에 ‘法典編纂委員會’가 조직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김병로, 부위원장은 이인이었다. 김용무는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 전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⁴⁷⁾

47) 법전편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특히 鄭種休, ‘韓國民法典의 制定過程’, 『民法學論叢』(厚岩 郭潤直教授 華甲紀念論文集), 博英社, 1985, 6면 이하; 梁彰洙, ‘民法典의 成立過程에 대한 小考’,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제3·4호(1989), 192면 참조.

위 원 장: 김병로(金炳魯)

부위원장: 이 인(李仁)

위 원:

권승렬(權承烈) 김용무(金用茂) 강병순(姜炳順) 김갑수(金甲洙)
 민복기(閔復基) 홍진기(洪璣基) 이상기(李相基) 김찬영(金瓚泳)
 양대경(梁大卿) 노진설(盧鎭高) 이명섭(李明燮) 김우설(金又說)
 한격만(韓格晩) 김윤근(金潤根) 정윤환(鄭潤煥) 장경근(張璟根)
 양원일(梁元一) 임한경(林漢璟) 김태영(金泰瑛) 민동식(閔瞳植)
 엄상섭(嚴詳燮) 이 호(李 濤) 김문호(金門鎬) 정문모(鄭文謨)
 이병용(李炳瑢) 박종근(朴宗根) 옥준진(玉濬珍) 김용찬(金溶燦)
 김윤수(金潤壽) 김영재(金寧在) 신언한(申彦澣) 원택연(元澤淵)
 유진오(兪鎭午) 이천상(李天祥) 권영욱(權寧旭) 조진만(趙鎭滿)
 신태익(申泰益) 김준평(金準枰) 최병석(崔秉錫) 최병주(崔丙柱)
 고병국(高秉國) 장후영(張厚永) 배정현(裵廷鉉) 김용식(金溶植)
 윤용섭(尹容燮) 현상윤(玄相允) 최규동(崔奎東) 이순탁(李順鐸)
 최태영(崔泰永) 장리욱(張利郁)

3. 대법원장 김용무의 수난: 이른바 “김계조 사건”

김계조(金桂祚)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과동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 김용무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역을 치렀다. 공소장에 나타난 사건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⁴⁸⁾

김계조는 19세 어린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 성공하고 조선에 돌아와 동양척식회사의 후원으로 회문탄광(會文炭鑛)과 조양탄광(朝陽炭鑛), 문화사업의 이름으로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하고 적극적 친일 행동을 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항복이 다가오자 일본인들은 그

48) 『조선일보』(1946. 1. 25.) 기사.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해외 세력의 입국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친일적 조선정부의 수립, 조미간의 이간공작, 배일 친미자 암살, 조선의 모든 비밀을 일본에 알릴 것 등을 획책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김계조는 일본의 관리, 경제인 등 유력인사로부터 현금 310만원과 위스키, 브론디 등 물자 5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아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 등을 이용하여 밀정과 정치모략을 기도하였다. 김계조는 우익과 좌익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금전과 물품을 살포하면서 가진 모략을 피하던 중 연합군이 의외로 신속하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김계조는 횡령, 장물수수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1946년 1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오승근(吳承根) 판사, 김홍섭(金洪燮) 검사의 입회 아래 제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군정청 고위관리를 비롯하여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보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계조의 유흥업에 김용무 대법원장이 중역으로 참여하겠다고 승인한 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오승근 재판장은 김용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공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김용무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김계조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⁴⁹⁾ 김용무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어 오승근 판사는 횡령·장물죄 외에 간첩예비죄까지 인정하여 김계조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10만 원을 선고했다.⁵⁰⁾

김용무 대법원장의 수난은 오승근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⁵¹⁾ 증인소환이 논의되던 1946년 2월 20일

49)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67~268쪽.

50) 이 선고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68쪽 참조.

51) 사건의 전개에 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70~272쪽 참조.

경 김용무 대법원장은 장경근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오승근 판사를 형사부에서 민사부로 전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오승근 판사는 강력히 반발했고, 서울 지역의 판검사 80%가 연명한 대법원장 불신임안이 군정청 법무국에 제출되었다. 1946년 4월 2일 김용무는 군정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월 4일 서울지역 근무 판검사들은 회의를 통해 군정청에 심상직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⁵²⁾ 그러나 군정청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⁵³⁾ 조용순(趙容淳, 1898~1975)⁵⁴⁾이 약 1개월 동안(1946. 4. 4.~1946. 5. 16.) 군정청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는 기록 및 이승만 대통령이 김병로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은 1948년 8월 5일 당시 과도정부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서소문의 대법원장실에 근무를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군정청은 김용무를 군정청 제3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계조 사건 재판을 계기로 나타난 사법부 분열 양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부분이 많다.⁵⁵⁾ 후자는 오승근 판사의 친일경력을 들어 친일보수법률가 세력과 좌익법률가 세력이 연합하여 초기 사법 권력을 장악한 김용무, 이인 등의 항일민족법률가 세력에 저항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⁶⁾

52) 이에 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74~275쪽 참조.

53)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75쪽.

54) 조용순은 김병로에 이어 대한민국 제2대 대법원장(1958~1960)을 역임하였다.

55) 몇 가지의 객관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은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72쪽 참조.

56) 이에 관한 설명은 김두식, 앞의 책 『법률가들』, 276~277쪽 참조.

맺음말

김용무는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 후 1923년 귀국하여 서울 인사동 75번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무실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약칭 ‘형사공동연구회’)의 사무실로도 활용되었다. 형사공동연구회에서 김용무는 이인·김병로·허헌 등과 뜻을 함께했다. 미군정기에는 대법원장으로서 대법관인 이인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1947년 구성된 법전기초위원회에서 당시 대법원장 김용무는 위원장, 사법부장 김병로와 이인은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김용무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성향의 변호사로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이다. 동아일보 취체역으로서, 보성전문학교 촉탁강사 및 교장으로서의 활동도 목격하다. 그는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 후신인 민주국민당의 후보로 자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무안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했고, 9·28수복 직전에 납북되었다. 1951년 사망한 후 2004년 3월 평양 용성구역에 조성된 ‘재북인사들의 묘’에 안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던 법률가로서,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김용무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해방공간에서 미군정기 대법원장으로서 여러 고초를 겪었고 행적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기는 하나, 과도기에 이 나라 사법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한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김용무는 그 활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묻혀있는 인물이다. 이 글을 계기로 김용무는 물론 그와 유사하게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인물들을 더 활발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